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433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4339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3256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변론 종결 2022. 8. 31.

판결 선고 2022. 9. 2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3256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19.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37,036,6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36,6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를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체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동창 모임에서 C의 형으로부터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에 부합하는 정당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C의 채권채무나 신용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8. 10. 19. 매매잔대금 24,0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인데, 매우 이례적인 매매거래 방식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행위는 없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잔대금 2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제1심법원의 법무사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현장 사진(을 제3호증)이 있다. 그런데 위 사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8. 10. 26. 찍은 것이고(을 제9호증), 사진에 있는 '현금인수증'의 '수령인'은 C이 아닌 피고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계좌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2018. 1.경부터 2018. 10. 19.까지의 현금 인출내역(을 제7호증)을 보더라도, 2018. 1.경 1,000,000원씩 6회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이 전부이고 2018. 10.경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 따라서 과거에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 통장에는 돈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던

피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③ 피고가 자인하는 대로 피고는 C의 형(M)의 동창이다. C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C의 형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은명

판사정일예

판사서호원

별지